

부산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가단310395(본소), 2022가단32432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권구철

피고(반소원고) B

변 론 종 결 2023. 3. 29.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 작성 2020년증서제149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2억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12. 28. 자신의 지인 D의 소개로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이 시행하는 아산시 G 일대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원고(F의 지인인 H의 배우자), D, I(F의 지인)과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동책임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관련하여 피고가 투자한 2억 원을 2021. 6. 11.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고, I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I은 피고에게 위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증인 C사무소 작성 2020년증서제1495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수익금 지급시기까지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한편 원고 소유의 부산 남구 J아파트, K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L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I과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2억 원을 분할해서 변제할 테니 피고가 신청한 경매신청 등을 취하할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D은 2022.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 2억 원 중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 1)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진행하기 위해 작성된 이 사건 서약서상의 책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익금의 분배방법을 정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될 것일 뿐이지,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상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2억 원의 채권 중 2022. 4. 1. 변제받은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통해 피고에 대하여 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단순 확인 차원의 형식적 의미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중 D이 피고에게 송금한 4,000만 원 외에 추가로 4,000만 원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증증서에 따른 채무 잔액 1억 6,000만 원(= 원금 2억 원 - 일부 변제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이성은

공동 책임 서약서(이행각서)

1. 아산시 [] 공사에 대한 2억원을 공정 일정에 따라 원금 회수 및 이자회수를 책임 진다 (일정 확인을 최 중요시 하며 각자 역할을 책임진다)
2. 공사 전체 50동을 전체 100%로 지정하며
이중 [] 공사 원금 및 대출금을 제외 한 금액을 수입으로 지정한다
3. 1동 공사금액 1억 5천만원 분할필지 대출금 6천만원
1동 분양가 평균 4억 5천 실 수입금 1동당 평균 2억원으로 지정한다
4. 모델하우스 4동 준공후 2동을 원금 및 수익금 분배한다
5. 2동 수익금 합을 4억으로 지정한다.
6. 모든 금액은 투자자 통장으로 회수한 후 분배한다
원금 회수 시기를 확실히 확인한다 (2020.12.28.~ 2021.05.28)
수익금 4억중 투자자 원금 및 이자 3억원
외 3인 1억원 그외 수입금은 현장 여건에 따라 진행한다.
7. 수익금 분배시 수익에 대한 세금은 각자 부담한다.
8. 투자자를 제외한 외 3인은 공사 및 채권을 책임진다
9. 투자자에게 공증 담보한 것은 투자자에게 분할필지 및 확실한 안전장치가 되었을 즉시 담보해지를 한다.
10. 100% 공사 완료 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서로가 인지하고 중도 포기나 책임 회피를 하지 않을 것을 서로 맹세하며 끝까지 완공 할수있게 최선을 다한다.

2020 . 12 . 28

투자자 : []
주민번호 : []

외 3인 :
주민번호
주민번호
주민번호

